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11 제안연월일: 2024. 10. 25.

제 안 자:신정훈·조계원·박 정

차지호 · 김종민 · 김한규

김현정 • 이기헌 • 박희승

전재수 · 이재관 · 부승찬

이정문 · 김영호 · 한정애

임광혂 • 양부남 • 정성호

이재명 • 박용갑 • 임미애

조인철 · 모경종 · 문대림

강득구 의원(25인)

제안이유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일자리·소득 창출,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성과를 내고 있음.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면·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 인 형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 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 황임.

이에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 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유형· 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서 제11 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음 (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지역소멸 위기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유형· 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서 제1 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마을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과 책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멸 위기극복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추진체계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 4. 마을기업지원기관 등 지원체계 구축
 - 5.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과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시·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 3. 시 · 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 4. 시 · 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5. 시ㆍ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도계획 수립·변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 별 시행계획 및 시·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마을기업 육성 ·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2. 마을기업 사업에 관한 평가 관리
- 3.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원 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 ·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육성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세재·재정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1. 마을주민이 대표자 및 구성원일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 법」에 다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 5. 지역의 소득·일자리 창출 기여, 지역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신청·심사·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마을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3. 시설비 등의 지원 · 융자
- 4. 부지구입 융자
- 5.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 6. 마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 7.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지원
- 9.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참여한 마을기 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3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 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그 밖에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 제15조(마을기업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 관·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및 제16조에 따른 마을기업지원기관 과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 2. 마을기업의 성과 평가
 -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 5. 전국단위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 · 운영 지원
- 6. 지역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마을기업 사업자 교육
-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 8. 효율적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
- 9. 제16조에 따른 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지원ㆍ지도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센터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 (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학, 연구원, 공공기 관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자원의 조사 및 관련 사업의 발굴
 - 2. 마을기업과 주민 간의 연계 협력

- 3. 마을기업과 지역 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기업·소상공인·교육기관·금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 4. 마을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5. 마을기업 관련 주민 교육 및 홍보
- 6. 마을기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마을기업협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마을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있다.
 - ② 마을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 2.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 3. 마을기업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 4. 마을기업 사업자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 5.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 6. 마을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부설 기관 운영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마을기업 관련 사업
- 8. 그 밖에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도·감독하며, 제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마을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점검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마을기업에 대한 점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자
 -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